

2022.  
APR + MAY + JUN

# 사 LAW SCHOOL ○

미 래 의 희 망 로 스쿨



- X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새로운 시작에  
형통의 길이 있다

- 『주역』

## Contents



2022.  
apr + may + jun

발행일 2022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04 **special report**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 020 **power interview**  
김소리 변호사
- 024 **hot issue**
- 026 **letter from**  
이훈희 변호사  
조은성 변호사
- 032 **real story**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최현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성환
- 038 **contest**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044 **happy lawschool**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진욱
- 048 **opinion**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 057 **book**
- 058 **health mentoring**
- 060 **statistics**
- 062 **law toon**
- 064 **culture**
- 068 **akls news**
- 070 **out campus**
- 071 **quiz**

# 1

3월 25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이 일군 성과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 <개회사>

한기정 이사장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권건보 원장 \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입학전형제도의 성과>

-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출신 법조인 증가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따른 지역별 변호사 수 증가
- 출신대학 다양성 증대
- 학부 전공의 다양성 증가



#### <장학금 지급의 성과>

-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 <평가와 과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방식, 서면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으려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인재상의 다양성과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한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를 지금과 같은 경직적 할당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정진근 교수 \_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간의 괴리>**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2월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다. 이 때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점만을 전달하고,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사실상 순위의 공개를 의미하며, 향후 대중에게 순위를 공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3대 축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교육과정 편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큰 목표로 이해된다.

• 합격률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순위 산정방식은 사법시험 제도와 대학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와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이행하면서 지역인재할당 의무가 없는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과정 평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과 평가요소의 개선방향>**

• **(교육과정 편제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성, 자율성,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 평가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수와 종류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현황자료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과정 MAP)** Map이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교과목 선정 및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 ▶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실무과목 교육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및 법무실습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몇 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실습프로그램의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주제발표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경 원장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한 채,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년 거듭되는 감축 대 증원의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하면, 2026년(15회) 이후 계속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구분	2020 (9회)	2021 (10회)	2022 (11회)	2023 (12회)	2024 (13회)	2025 (14회)	2026 (15회)	2027 (16회)	2028 (17회)	2029 (18회)	2030 (19회)
응시자	3,316	3,171	2,900	2,600	2,411	2,282	2,240	2,264	2,290	2,307	2,315
합격자	1,768	1,903	1,957	1,885	1,868	1,826	1,792	1,812	1,832	1,846	1,852
불합격자	1,548	1,268	942	715	542	456	448	453	458	461	463
합격률	53.32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아래 논의되는 사항들이 준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인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
  -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법과목) 개선
  - 응시횟수 제한 철폐
  - 자격시험화를 위한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
  - 시험방식, 시험시행 횟수 등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시험관리 주체의 변경의 필요성)



**<변호사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총사기관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변호사가 법률사무총사기관에서의 6개월 동안 취급해야 하는 법률사무의 종류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변호사의 직역이 다양화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송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 검찰청의 검사실, 조사실과 피고인과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및 소년원을 찾아가서 그 시설 등 환경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①> 정승환 원장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위주의 선발이 강요되다시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의 서류평가와 면접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자의 전공 등 특성에 따른 평가가 제한되어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자율성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 외국어성적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지원자들이 응시해서 제출하는 평가기관별 점수가 다양해서 일관된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장차 법조인으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KBS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방안 등)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금처럼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 방식에서 엄격한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평가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법조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종합토론②> 장석천 원장 \_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방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원의 충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해당 지역 이외의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과 이런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을 위해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다시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평가기준이 너무 교육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평가위원회가 너무 학교 교육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교과과정을 법조인 양성에 적합한 과정을 만들었다면 그 각각의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 교원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며 교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수업권(授業權)이다. 그러나 5.교육성과 부분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한 간섭이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평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 변호사가 너무 많아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무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법률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③> 유동주 법조팀장 \_ 머니투데이**

- 입학단계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교육부에 의해 더 표준화됐고 더 투명해졌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의 부정입학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점에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의 투명성만큼은 이제는 역사속에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로스쿨 내부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타율적인 개혁이었던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남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의 숙제는 ‘다양성’ 확보다. ‘부정’의 개입 여지가 줄었지만, 스펙 혹은 리트와 학점 및 영어점수 ‘줄세우기’나 마찬가지로 지저분해 버렸다.
- 변협의 로스쿨 평가가 변시 합격률 이슈와 결부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평가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법령에 따른 정기 평가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 법무부는 사시 출신 검사들의 조직이다. ‘법조인력’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무부 검사들은 퇴직 후엔 ‘전관’ 변호사가 된다. 변시를 통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검사들은 스스로 퇴직 후 입지가 좁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는 법률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변시 합격률과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변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다. 그들의 선의를 믿기보단, 제도적으로 그들이 그런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법무부가 변시 업무를 그대로 하게 뒀선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종합토론④> 김기원 법제이사 \_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가 있다. ① 입학전형과 과정의 공정성 ②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③ 법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균형있게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면서도, 5탈자 문제의 해결 ④ 구호에 그쳤던 유사법조직역/공무원의 로스쿨로의 일원화-통폐합 문제의 진전
- (학석사 연계 과정)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의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 할 때 1년마다 전국에서 1,000명 정도의 학생을 ‘학석사 연계 과정’ 생으로 선발한다. 해당 학생은 일반 학과(국문학과, 물리학과 등)에 입학하나, 잠재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에의 진학 가능성을 보장한다.
- (교육연한 증가) 교육연한을 4년제로 늘려 다양한 법 분야, 실무교육 등을 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4년제의 실시와 연계되어 있다.
- (법학적성시험 개편) 법학적성시험의 시험일수를 2~3일로 늘리고, 시험과목을 확대하며, 논술형 시험의 과목과 비중도 늘림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이 시험 자체로 우수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하고 매해 1,850명을 합격시켜도, 매년 100여명의 5탈자가 생긴다. 모두가 변호사를 보장받으면서도, 모두가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이상적인 교육구조를 당장 설계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완전한 낙오자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은 다소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사법조직역이나 법무 관련 공무원 등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불합격자에게 퇴로가 없는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을 요구하는 형태로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으며,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 ▣ 건의 배경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본 협의회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향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그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비율로 합격자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 건의 내용의 요지

- 최근 수년간, 변호사시험의 합격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가파르게 하락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어야 함에도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마치 얼마 전 폐지된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학생까지도 현재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불만족하며 변호사시험의 평가 방법이 법학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은 결국 건전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본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그 취지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이 초래한 문제점, 나아가 도입 취지를 고려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그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백서에 의하면 사법시험이라는 기존 법조인 배출 제도가 충실한 법학 교육이 아니라 고시학원의 수험법학에만 숙달된 법률가를 양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대학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수험용 법 지식이 법조인의 선발기준으로 획일적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부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국내용 수험법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심화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배움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법조인으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즉,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체계로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설계한 것이며,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적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 실제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배출”하되 “자질과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과락자 중 일부를 탈락시킴으로써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하고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 도입 취지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이 초래한 문제점

- 실제로 법무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초기인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 결정을 하였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현황 >>

(단위: 명, 점)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제9회 (2020)	제10회 (2021)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합격률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합격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900.29	895.85

- 그런데 그 이후 회차가 거듭될수록 응시자가 적체되는 반면 합격자 수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응시자가 누적되어 3,000명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응시자 수가 160명 감소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언급하며 합격률 자체는 올렸으나 합격자 인원은 전 회차에 비해 62명 적게 선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안정화될 수 있던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 이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에 대해 심의를 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외에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 등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sup>1)</sup>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법조인 배출 인원을 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더한 배출 법조인 수가 2012년(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해)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명을 더하여 2,481명이었으나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해)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1,70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법조인 배출 인원 >>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56	234	171	117	68	1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배출 법조인 수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1,808	1,836	1,707

- 결국,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합격자 수를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았던 것

1)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회 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 인원(1,581명),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힘.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10회 54.06%로 급감하였으며 불합격자 수도 제1회 214명에서 제10회 1,450명으로 6.8배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0%를 넘는 합격률을 보이는 의사 국가시험 등 여타 자격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 의사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비교 >>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3,302	3,323	3,336	3,373	3,307	3,210	3,214	6,043
	합격자	3,126	3,106	3,095	3,204	3,115	3,025	412 <sup>2)</sup>	5,786
	합격률	94.67%	93.47%	92.78%	94.99%	94.19%	94.24%	12.82%	95.75%
변호사시험	응시자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합격자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
	합격률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는 소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으로 대폭 상승한바, 이는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본래 그 도입 취지였던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정하였던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고, 다시 사법시험으로 회귀시킨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법개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법시험의 폐해가 다시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예컨대 당장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어려워진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지상 최대 목표에 압도되어 변호사시험 과목 및 그 연관 수업들만을 수강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방학마다 변호사시험 과목 학원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 강의를 폐강되어 사라지면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각각 내세웠던 특성화 분야 교육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 또한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선택법 7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을 선택한 비율은 41.20%에서 64.79%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험부담이 많은 노동법의 경우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0.99%였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6.4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고 준비 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들이 대규모로 취소하였음.

<< 변호사시험 응시 수험생의 선택법 과목 선택 비율 >>

구분	전체	경제법	국제 거래법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환경법	
1회	응시자	1,665	228	413	94	516	59	82	273
	비율	100%	13.69%	24.80%	5.65%	30.99%	3.54%	4.92%	16.40%
2회	응시자	2,046	285	805	59	405	45	88	359
	비율	100%	13.93%	39.35%	2.88%	19.79%	2.20%	4.30%	17.55%
3회	응시자	2,292	225	1,032	63	359	33	61	519
	비율	100%	9.82%	45.03%	2.75%	15.66%	1.44%	2.66%	22.64%
4회	응시자	2,561	192	1,116	64	319	49	52	769
	비율	100%	7.50%	43.58%	2.50%	12.46%	1.91%	2.03%	30.03%
5회	응시자	2,864	199	1,240	95	405	57	73	795
	비율	100%	6.95%	43.30%	3.32%	14.14%	1.99%	2.55%	27.76%
6회	응시자	3,110	270	1,397	181	439	71	80	672
	비율	100%	8.68%	44.92%	5.82%	14.12%	2.28%	2.57%	21.61%
7회	응시자	3,240	309	1,404	241	415	81	95	695
	비율	100%	9.54%	43.33%	7.44%	12.81%	2.50%	2.93%	21.45%
8회	응시자	3,330	378	1,493	236	333	108	114	721
	비율	100%	11.35%	44.83%	7.09%	10.00%	3.24%	3.42%	21.65%
9회	응시자	3,316	427	1,224	303	242	99	115	906
	비율	100%	12.88%	36.91%	9.14%	7.30%	2.99%	3.47%	27.32%
10회	응시자	3,156	386	1,147	298	203	103	121	898
	비율	100%	12.23%	36.34%	9.44%	6.43%	3.26%	3.83%	28.45%

○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내몰리게 됨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 적극적 활동이 빈약해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3년간의 수험용 암기 과정에만 매몰되어 그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창의성과 개방성마저 퇴화시켜 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유 중 하나는 법률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인원의 7%를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 중에서 정원의 10~20% 이상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그 합격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이러한 특별전형 입학자와 지방인재 입학자의 실질적인 변호사 합격률은 그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전체 합격률은 50.8%이고 수도권 일반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61.2%였으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33.6%였습니다. 특히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18.8%에 그쳤으며 지역인재 졸업생의 합격률 역시 35.9%에 불과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배려와 지방인재 법조

인 양성이라는 목표가 그저 구호에만 그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렇듯 다시 법학 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수험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은 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점차 변질되어 “다시 사법시험”의 형태가 되어버렸으며, 그 결과 사법시험이 초래했던 문제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도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변호사시험 포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평가 방법이 법학 교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행과 같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유지되거나 하락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가 상실되고 그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sup>3)</sup>

○ 나아가 변호사시험이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에 맞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자의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구 1만 명 당 법조인의 수가 크게 낮습니다. 이는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sup>4)</sup>

<<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 >>

(단위: 명)

구분(2018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법조인 수	1,338,678	215,442	75,271	192,096	31,974
변호사 수	1,338,678	209,464	66,958	165,855	25,383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	6.86	6.99	2.93	5.37	1.86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	40.85	32.09	11.58	23.11	5.01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	6.86	6.79	2.61	4.63	1.50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0.85	31.20	10.30	19.95	6.20

○ 더욱이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 법률자문, 공증, 알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위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의 배타적 업무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영국의 경우 법률 자문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률자문 활동을 하는 비변호사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본 협의회에서 발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4) 2020 법무부 응역보고서, 247면

○ 이는 곧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법률 관련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이 선발시험으로서 법조인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인해 발생했던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에 반대하는 주장과 그 근거

○ 현행과 같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결정은 필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 했던 취지와 상충하는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가. 이러한 합격률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황의 배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변호사가 2012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16,049명(응시자 대비 50% 수준)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입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직종인 의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의사 수는 24,869명(응시자 대비 95% 수준)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보다 8,820명이 더 배출되어도 시장에서는 의사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및 이에 대한 자격시험으로서의 합격 결정에 대한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률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그 소득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존 법조 종사자들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맥락에서 이미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변호사 공급을 동결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변호사들의 소득 수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 불과하며, 기존 기득권 변호사가 자신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로 국내 송무사건의 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민·형사 소송사건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법률시장 매출 규모는 2010년 3.1조 원에서 2020년 6.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2021년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규모도 2.9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 주장과는 달리, 기존 전통 송무 영역뿐만 아니라 비송무 영역, 국제 영역으로 법조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바, 이를 두고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서 연간 5,000명 이상의 법학전공자가 배출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법학과들이 폐지됨에 따라 줄어든 법학전공자의 숫자가 2,423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법학과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는 학부 법학전공자가 도입 이전인 2007년 11,294명에서 2015년에 4,512명으로 약 6,700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법학전공자 배출 감소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커서 결국 법률서비스 인원에 대하여 존재하던 사회적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계속 90%를 상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률 >>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취업률	96.2%	96.2%	92.6%	92.7%	81.5%	90.3%	94.1%	94.6%

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1~2020학년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에 달합니다.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수도 평균 90.8명에 달합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사관리가 엄정한 예로 거론되는 의대와 비교하면(2020년 대학알리미 기준), 의대(본과)의 경우 36개교 재학생 11,830명 중에서 고작 22명(0.19%)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5개교 6,206명 중에서 자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이 중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작용되는 자퇴를 제외하고, 제적만 놓고 보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의대보다 오히려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2~3년마다 받으면서,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엄격한 재정요건, 시설요건, 강의적합성, 연구실적 등이 요구되는바,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수천 페이지가 넘는 실사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거나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라.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 변호사 숫자를 이에 연동해서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감소하더라도 1인당 GDP 혹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단순히 인구만으로 변호사 수를 결정할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일 교수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900명(입학정원 2,000명의 95%)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9년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5명에 불과하며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49년 주요국의 변호사 수 비교 >>

(단위: 명)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	5.28	7.79	3.29	4.08	2.47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8.6	49.2	18.5	25.7	14.5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 대상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 인원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나는 질문에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학생 2,171명 중 78.6%, 교수 204명 중 78.9%로 나타났다.



마. 한편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변호사 선발인원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인구가 2.48배 많고 국내총생산 규모가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 배출 규모가 현재보다도 더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배출 규모를 타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인구 및 국내총생산의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규모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고 고소·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합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큼니다. 더구나 일본은 법조 유사직역의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법률가 양성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한 대학은 학부에 법학과를 둘 수 없으며 개설하지 못한 대학도 법학과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기업 법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법치주의 및 법률시장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국가입니다. 국내총생산 중 법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인구당 변호사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법률시장의 규모 자체는 한국보다도 작습니다.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로펌들의 대형화, 국제화도 한국에 뒤처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호사배출 수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하자는 여러 주장은 결국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보다는 기존 법조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주장들인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완전히 상충합니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기반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 결정을 하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여 자격시험이라는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험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높은 장학금 혜택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최상의 교육과정·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재학생의 51.25% 장학금 수혜 (2021학년도 1학기 기준)</li> <li>· 전체 재학생의 20.5% 전액 장학금 수혜 (2021학년도 1,2학기 기준)</li> <li>※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3구간)에게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 지급</li> <li>·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100%~10%의 장학금 지급</li> </ul>	<p><b>&lt;특별전형제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교 입학자의 7% 이상 선발</li> <li>·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총 1,958명(09~22년)</li> <li>·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3년간 장학금 지급(학교별 상이)</li> </ul> <p><b>&lt;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재 법전문원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5~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li> <li>·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생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li> <li>·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한 충실한 실무 교육 제공</li> <li>·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li> <li>· 강의실, 모의법정, 전용도서관, 전용열람실, 기숙사, 휴식공간 등 교육/편의시설 마련</li> </ul>



**시험일**  
2022. 7. 24.(일) 09:00 ~ 15:50

**시험지역** | 전국 9개 지구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 가능  
- 시험 장소는 수험표 교부 기간(7. 5. ~7. 24.)에 발표함

**원서접수**  
2022. 5. 24.(화) 09:00 ~ 6. 2.(목) 18:00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응시료 : 248,000원(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험영역**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비고
1	언어이해	30	7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25분	5지선다형
3	논술	2	110분	서답형

**성적발표** | 2022. 8. 24.(수) 10:00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확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일정**  
원서접수 : 2022. 9. 26.(월) 09:00 ~ 9. 30.(금) 18:00  
합격자 발표 : 2022. 11. 21.(월) ~ 12. 2.(금)  
(합격자 발표는 발표 기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정함)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 2,000명)**

강원대(40)	건국대(40)	경북대(120)	경희대(60)	고려대(120)
동아대(80)	부산대(120)	서강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영남대(70)	원광대(6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중앙대(50)	충남대(100)	충북대(70)	한국의대(50)	한양대(100)

**문의** | 02)888-2031, 2034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 참조

법과 인권으로 특화된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책방. 가지런히 정리된 600여 권의 책들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한쪽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난 1월, 봉천동에 ‘밝은책방’이라는 이름의 서점을 연 김소리 변호사를 만났다.

## “법률사무소이자 사랑방 같은 서점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싶어요.”

김 소리 변호사 (밝은책방, 법률사무소 물결)



### 학부 시절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나?

전공인 언론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과학 동아리에 가입해서 경제문제라든가 노동문제 등을 공부하며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당시에 비정규직, 한미FTA 등이 큰 이슈였는데,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을 공부하다 보니 언젠가 나도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 변호사의 꿈도 그때 생긴 건가?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던 선배들이 막상 사회에 진출하니, 고민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사회문제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밥벌이를 하는 동시에 사회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안전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다.

### 로스쿨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다(웃음).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A+부터 D+까지 무조건 나오는 구조였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엔 전부 우수한 학생들밖에 없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C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누구는 C를 받고 누구는 D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조가 나를 많이 압박했다. 오히려 3학년에 올라가서 학점 경쟁이 끝나고, 변호사시험 공부만 하니까 그제야 조금 편안해졌다.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로스쿨에서도 이어졌나?

로스쿨 3년간 인권법학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로스쿨 내에 대형 로펌이나 검찰, 법원 등에 가려는 분위기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자칫 휩쓸릴 수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공익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실무 수습도 참여연대, 민변, 시민단체 등에서 했다.

###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했다.

실무 수습기관에서의 인연이 이어져 졸업 후에는 참여연대 변호사님께서 만든 로펌에 입사했다. 공익 사건을 많이 다루는 로펌이어서, 고 신희순·심미선양 13기 추모행사 관련 소송,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관련 소송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경험도 하였다. 중간에 국회에서 잠깐 일했던 8개월 가량을 제외하면, 6년 넘게 송무 업무를 했다.

### 그러던 중 지난 1월, 봉천동에 책방을 열었다.

계속되는 소송 업무로 지친 상태였다. 물론 의미 있는 공익 사건을 많이 다루어서 일에 대한 보람은 컸지만, 영리 사건도 함께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컸다. 계속 이렇게 주말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서점을 열게 되었다.

### 왜 ‘서점’인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생각해봤더니, 문화와 예술이었다. 요즘의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보다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나의 성향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책을 판매하는 동시에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하는 등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았다.

### 밝은책방은 어떤 컨셉인가?

변호사가 운영하는 책방이라는 특색을 살리고 싶었고, 그것을 셀링포인트로 삼았다. 고객들도 변호사인 운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니, 책도 노동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장애인인권 등 기본권 중심으로 분류했다. 물론 법과 관

공익 사건을 많이 다루어서 일에 대한 보람은 컸지만, 영리 사건도 함께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컸다. 계속 이렇게 주말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서점을 열게 되었다.



책과 변호사가 있는 곳, <밝은책방> & <법률사무소 물결>

련된 서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책을 판매 중이다.

**밝은책방이 지향하는 바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각종 전시, 북 토크,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를 초청해 공연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이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하는 동시에,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싶다.

**지역주민의 유입이 느껴지는지.**

아직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이나 인근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또 사로수길과 인접해 있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2030 청년들의 방문도 잦다. 특히 변호사가 오픈한 서점으로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님들도 많이 방문해주신다.

**송무 변호사의 일과와 책방 운영자로서의 일과를 비교하면?**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바쁘다(웃음). 송무 변호사를 할 때에는 준비서면을 쓰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재판에 나가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책방 운영자인 요즘은 SNS로 하루를 시작한다. 서점이 오픈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리고, 신간을 주문한다. 책 리뷰를 올리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행사 기획이다.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북 토크, 콘서트,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하다(웃음).



최정규 변호사 북토크



윤중 공부



밝은책방 내부

**책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인가?**

고객들이 책방을 둘러보고 “진열된 책이 다 좋다”는 반응을 보일 때 행복하다. 좋은 책이 많고, 사고 싶은 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책 선정을 잘했다는 뜻이지 않나. 서점에 있는 수백 권의 책 모두 나름의 의미를 담아 선정한 것이니, 구성이 좋다는 칭찬은 몇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또 가끔씩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재학 중인 분들이 방문하여,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시다, 멋지다.”고 말해주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각오를 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일정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자영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웃음). 기관상담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책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간판이 두 개다. 책방에서 법률 상담도 진행하는 건가?**

원래부터 같이 할 생각이었다. 책방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웃음). 법률상담 등 변호사 업무는 다른 변호사님 한 분과 함께하고 있다. 고용변호사로 일할 때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맡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은 맡지 않아도 된다.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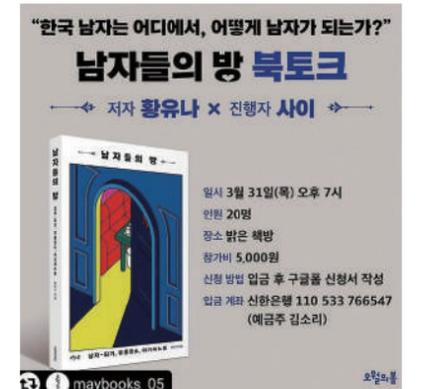
**향후 계획은?**

책방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책방에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만들 예정이고,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로스쿨’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행사 중 하나다. 최근 문학 작가들과 함께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법조계 동료들과의 토크 행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제 되는 이슈를 발굴해서 인근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소송을 해보고자 하는 원대한 꿈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웃음)

**송무 이외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관심사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면 좋겠다. 서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작한 내가 성공사례가 될지 실패사례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웃음), 후배님들의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밝은책방

**김소리 변호사**

現 밝은책방 운영  
現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前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前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

issue 01

2022학년도 로스쿨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2월, 전국 25개교 로스쿨에서는 2022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2022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 학사보고 및 교직원 소개, 학교생활 소개, 조별 모임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각 교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은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서울대학교 입학식 (출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학식 (출처: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로스쿨팀

제1회 아시아퍼시픽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 한국 역대 최고성적 기록

2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열린 '제1회 아시아퍼시픽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에서 이화여대 로스쿨 12기 박주원, 이다은, 13기 김다솔, 김수빈, 나현수, 박재은, 신민정, 양소영, 이지은, 최혜정 학생이 한국 대학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아시아퍼시픽 프리무트는 국제거래법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사법 최고의 모의재판 대회인 '비스무트 대회' 전 개최되는 모의재판 대회로 세계 각국의 법학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중재 분야에 관한 서면 작성 및 구두 변론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개국에서 100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화여대 로스쿨 팀은 4위를 기록했다.

issue 03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 아주대 로스쿨 박성수 학생 최우수상 수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가 지난 2월 25일(금) 개최됐다. 대회는 로스쿨 제도(변호사 시험, 실무수습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우수상은 아주대 로스쿨 박성수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건국대와 성균관대 로스쿨 팀이 수상했다.



issue 04

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연세대 로스쿨팀 우승

2월 19일(토)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12th The Willem Vis Pre-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에서 연세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연세대 팀은 우승을 비롯해 우수서면상을 수상하였으며, 팀 대표인 윤혜원 학생이 결선에서 최우수변론상을 받아 3관왕을 달성했다. 매년 2월 실시되는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우리나라 국제중재 관련 기관 및 상사중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자, 학자 및 미래의 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중재 커뮤니티의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칭화대, 와세다대, 인도 라지브 간디 국립법대 등도 참여하는 등 아시아와 유럽, 북미, 남미에서 역대 최다인 34개 팀이 참여해 서면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에 참가한 연세대팀 (출처: 연세대학교)

2022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정

- 응시 대상: 3학년 재학생
- 응시 장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시험 일정
  - 1차: 6월 20일(월) ~ 6월 24일(금)
  - 2차: 8월 1일(월) ~ 8월 5일(금)
  - 3차: 10월 14일(금) ~ 10월 18일(화)
- 세부 일정



구분	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	시간	문형
1일차	공법	10:00 ~ 11:10 [70분]	선택형	13:00 ~ 15:00 [120분]	사례형
				16:00 ~ 18:00 [120분]	기록형
2일차	형사법	10:00 ~ 11:10 [70분]	선택형	13:00 ~ 15:00 [120분]	사례형
				16:00 ~ 18:00 [120분]	기록형
3일차				휴식일	
4일차	민사법	10:00 ~ 12:00 [120분]	선택형	14:00 ~ 17:00 [180분]	기록형
				※ 16:00부터 화장실 사용 가능	
5일차	민사법(오전) 선택과목(오후)	10:00 ~ 13:30 [210분]	사례형	15:30 ~ 17:30 [120분]	사례형
				※ 12:00부터 화장실 사용 가능	

## 형사국선변호와 국민참여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이훈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훈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형사 국선사건을 맡아왔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자주 접하였습니다. 처음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할 때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그들과 신뢰를 쌓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합의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국민참여재판을 다루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맡았을 때는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통상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재판과 다른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변론과 선고

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필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하거나,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혹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배심원들에게 쉽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배심원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판에 앞서 배심원후보자 중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가려내기 위하여 상호 교차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나 실제 선정절차를

국민참여재판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맡았을 때는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통상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행해본 결과, 질문을 통해 유리한 사람을 선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배심원으로 선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은 검사가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오히려 질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유리한 배심원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절차가 되도록 유리한 배심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질문에는 배심원의 범죄에 대한 단순 성향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들이 사전정보

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 재판절차와 동일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배심원에게 피력하고 준비절차에서 밝힌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통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나므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일반재판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부담되었으나, 배심원에게 복잡한 사실관계와 방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들이 장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점을 방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과 재판에 일반인들의 새로운 인식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고자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피고인에게 부정적이지는 않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론을 달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들이 평의 및 평결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 변론을 마치고 평균 2~3시간 정도 평의 및 평결을 하므로, 선고는 저녁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변호인이 선고 때 출석합니다. 피고인과 함께 재판의 결과를 듣다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일반인들이 내린 결론에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를 떠나 오랜 시간 변론한 변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을 설득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법관이 아닌 일반

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은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독려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과 재판에 일반인들의 새로운 인식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복잡하고 부담된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낯설음에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일반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기능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재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배님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훈희 변호사**

변호사시험 3회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및 202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국선변호인,  
2021년 제16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각 수상

## 그 시절, 낭만에 대하여



법무법인 위 원주사무소 변호사  
조은성 변호사

2월부터 tvn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스물 다섯 스물 하나’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998년 즈음을 배경으로, 시대에 꿈을 뺏긴 청년들의 이야기로 드라마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대의 어머함이 꿈을 빼앗아가거나, 꿈을 향해 조금 돌아가게할지언정, 결코 그 시절의 낭만만은 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스물 하나는 정치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를 꿈꾸는 대학생이었고, 졸업반이던 스물 셋은 로스쿨로 진로를 급선회한 시기며, 스물 넷은 원하던 로스쿨에 입학한 때입니다. <로스쿨 창>은 로스쿨 2기로 입학한 제가 졸업한 뒤에 창간되었습니다. 원고를 쓰기로 하고 지난 호 몇 권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 중 재학생들이 쓴 글을 읽으며 잊고 지낸 그 시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10년 3월, 제도가 맞을 올리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습니다. 재학생은 1, 2학년이 전부이고, 학교는 신입생을 위한 강의실, 휴게실, 열람실과 사물함 등을 계속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단 1회도 치러지기 전이었으니, 사법시험에 준하는 난이도와 유형을 가늠해볼 뿐 기출경향이니 기출문제집이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당시 스물 넷, 저의 경솔과 무경험이 제도의 불완전함 짙은 가볍게 뛰어넘을 만한 수준이었다

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어도 각자가 채운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권면을 주게 마련일텐데요. 누군가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내달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좀 더 여유를 가지기를, 주위를 둘러보며 가기를’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치는 편지는 그날의 저처럼, 온갖 의문을 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수신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그 시절의 낭만은 몰입과 성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서 그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저에게 새 학교, 새 학기, 새로운 환경과 관계들은 무척이나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대학 새내기로 돌아간 듯 이곳저곳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며, 실은 그 시절만이 줄 수 있는 진한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몇 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고, 법학은 벼락치기로 승산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 환골탈태했느냐면, 그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저는 본디 잘하고 싶은 생각일랑 없었던 척하는 비겁(?)한 쪽을 택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열심히 하는 모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매일이 꽃길은 아니지만,  
이 길이 아니어도  
인생은 충분히 빛나지만,

이 길에 진입한 이상 각자의 인생  
그래프에 굽직한 점 하나를  
찍는 중인 건 분명합니다.  
안팎의 소란에 눈길 주지 않고  
묵묵히 몰입하여 최선을라는  
수식어 앞에 당당한,  
그 시절의 낭만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응원해봅니다.

습을 보이기는 싫은 알량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수험을 접근하는 방식 등을 물어 배우고자 하지도 않았습다.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렸는데, 열심히 했다가도 정작 제자리일까봐, 그때는 그게 그렇게 겁이 났습다. 결국 일관된 태도로, 그 시절에 수고함으로 맛보는 낭만을 포기한 줄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다.

독일의 철학자 나탈리 크납은 자신의 책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에서 "산책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 등등,

우리가 어떤 일에 온전히 몰두해서 '지금 여기'를 강하게 지각하느라 나를 별로 느끼지 못할 때는 당장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몰입을 통해 우리 지각의 틀이 확장된다" 고 말했습니다.

어쩐지 저의 로스쿨 생활은 길고 지루했으며 지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차저차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5일의 대장정을 마친 후 어느 날, 행정실은 제게 졸업이수학점이 3학점 부족해 졸업이 불가능하고, 고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은 무효처리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명 학교의 졸업사정과 변호사시험 응시생 확정 과정의 부실이 있었지만, 내내 성실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먼저 떠오르며 그날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우여곡절을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몰입의 땀방울을 그득 흘렸습니다. 불확실한 수험생활의 낭만을 충분히 음미할 즈음에야 합격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모로 값진 시간이었지만 외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매일이 꽃길은 아니지만, 이 길이 아니어도 인생은 충분히 빛나지만, 이 길에 진입한 이상 각자의 인생 그래프에 굽직한 점 하나를 찍는 중인

건 분명합니다. 안팎의 소란에 눈길 주지 않고 묵묵히 몰입하여 최선을라는 수식어 앞에 당당한, 그 시절의 낭만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응원해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하기 위해 쉬어가자'는 것입니다. 몰입의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찾아오는 무기력과 매너리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근래 근력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에 감각이 생기고 근력이 늘어가는 기분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흘 운동하고 하루 쉬고 다시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는 루틴으로 운동하는데, 이때 운동을 쉬는 날이 하는 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쉬어감으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수험 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요.

완전히 떠나는 일탈(?)은 돌아오는 여정을 길게 하니 권할만하지 않고, 휴식에도 가급적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두면 유용합니다. 수험 후기를 보아도 쉬어가는 방식이나 슬럼프 극복법은 빠지는 법이 없는데, 그 내용들은 대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환기들입니다.

저는 여러 업무와 일정을 소화하다 지칠 때 오히려 짬을 내 주변을 청소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챙겨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정신활동을 멈추고 약간의 육체활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을 거니는 산책은 특히 간편하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정직한 힘도 생겨납니다. 모쪼록 쉬어가는 것은 계속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드라마에는 청춘의 주인공과 사춘기 딸을 둔 중년의 주인공이 교차로 등장합니다. 그 시절 IMF가 있었다면 오늘 주인공에게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어도 경험을 통해 부딪쳐 배우고 누적해가야 할 것들 투성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지만, 때론 더 이상 누추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실패와 부끄러운 순간들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원하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어야 하는 삶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금 이 시절만이 지닌 낭만을 놓치지 않으려 몰두합니다.

그게 자랑이나 싶은 이 자기고백적 글이 지면에 실려 박제된 다음 저는 불쑥 후회의 먹구름에 뒤덮여 울고 싶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쯤 시간이 더 흘러 오늘의 미숙함을 되돌아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더 배우고 앞을 향해 마저 걸어야겠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못내 석연치 않았는데 이 글을 빌어 그때의 저를 과거의 한 페이지로 보내줍니다.

가파른 산을 끝까지 오른 뒤 산들바람에 땀을 식히며 먼 곳을 바라볼 때의 상쾌함을 아실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더없이 개운하고 활기분하시기를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 조은성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위 원주사무소 변호사  
現 횡성군 고문변호사, 강원도교육청 자문변호사  
前 재단법인 사랑샘 북한이탈주민전담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에서의 지난 1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입니다. 저는 2021년 3월 법률자문조교로 선발되어 2022년 2월까지 1년간의 근무를 마쳤습니다. 법률자문조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에 소속되어 학내 각종 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학내 법률 분쟁에 대한 의견서 작성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매년 1월 로스쿨 2학년 진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명 내지 2명의 조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교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로스쿨 창> 독자 여러분들과 그간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I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법학을 배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자문 업무를 제대로 보조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대법 제3조 제1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 어떤 법인인지는 법 문언에서 전혀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공익적 성격이 짙은 서울대학교의 특성상 재단법인과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에는 이미 형성된 판례의 법리를 외우고 적용하는데에 그쳤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법적 쟁점들은 지금껏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판례 법리로 해결이 어려운 법률 질의에 답하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 정관과 법령, 200개가 넘는 학내 규정과 지침, 그리고 국가기관의 가이드라인 등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의뢰처의 고민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을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처의 입장에서 생소한 법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정보의 출처를 덧붙였습니다.

한 건 한 건 자문 의견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실제 살아있는

법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점차 재밌어졌고, 학생으로서는 절대 해볼 수 없었을 경험이라는 생각에 이 기회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매력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거대한 법인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을 마주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법적 구조와 틀을 마련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품게 되었습니다.

### III. 법률자문실에 남겨져 있는 조교의 역사

조교로 일을 시작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법률자문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자문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감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법률자문실의 가장 큰 장점은 관악산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유리 창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관악산의 색깔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또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 모습을 매일 한없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도 법률자문실에 나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관악산만 바라보다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여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눈을 살포시 감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정신을 쏟아본 적도 있습니다.

법률자문실은 상당히 역사가 긴 공간입니다. 저희 로스쿨의 교수님 중에서는 교수님 당신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법률자문조교를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이시던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법률자문실의 역사 속에 제가 그 일부분을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법률자문실 안에 있는 책상과 의자 등 물품의 구매연도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물품들이 아직까지도 쓸만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쓴 법률자문 서류들이 문서별로 정리되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나면 저 역시도 법률자문조교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 IV. 임기를 마치며

지난 1년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찼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법률자문조교를 지원한 순간을 택할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조교로서의 1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가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자문조교로 일하며 다섯 분의 교수님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학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였음에도, 항상 잘한다는 칭찬과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전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이 글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가르침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YK 실무수습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최현진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최현진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 새로운 환경, 많은 공부량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1년이었기에,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1학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경험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YK의 실무수습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로펌으로, 지사가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고 모든 지사와 본사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작년까지는 교대역에 있는 본사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YK의 특성을 살려 각 지사별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종합 로펌이기에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경험과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지사의 경우 통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부랴부랴 준비하여 지원하였고 총 4명의 실무수습생이 2주간 함께 하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II. 다채로운 특강

법무법인 YK 고양지사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크게 특강, 과제, 멘토링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본사 및 지사 변호사님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들으면서 변호사의 폭넓은 업무영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노동, 마약, 건설부동산 등 특수영

역에 대해서도 특강이 이루어져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관심 분야였던 지식재산권 특강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마약 특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로스쿨 생활 동안 학업에 매몰되어 변호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활동들, 사람들과 단절된 로스쿨 생활을 보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희미하게만 보였던 변호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 III. 생생한 서면 작성 과제

뿐만 아니라 2주 동안 형사, 민사, 가사(이혼), 보전처분의 4가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과제는 전반적으로 현재 고양지사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건들의 기록을 보고 소장, 반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 배운 실제법과 소송법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과제에서는 친고죄와 공소시효, 민사 과제에서는 유치권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학습한 지 얼마 안 된 쟁점들을 실제 사례에서 발견하게 되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 현실화되는지, 왜 해당 법리가 중요했던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수습 종료 이후에도 더욱 생동감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실무수습 당시 소송법을 모두 학습하지 못한 상태였고 서면 작성의 경험도 전무했

기에 과제 수행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스쿨 생활 동안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어진 4가지의 과제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아가, 스스로가 어떤 분야를 접할 때 특히 흥미를 느끼는지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IV. 개별 멘토링과 뜻깊었던 조언들

마지막으로 개별 멘토링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지사의 경우 총 4분의 변호사님들이 계셨고, 실무수습생 역시 4명이었기에 1:1로 멘토가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받은 멘토 변호사님과 개별적인 면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로스쿨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섬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실무수습 지원 당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은 물론 진로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사 및 지사의 변호사님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당시에, 인생에 정답이란 없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가치관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많은 방향들을 제시해주셨던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V. 마치며

2주간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더 참여하고 싶어 아쉬움이 남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실무수습 마지막 날에는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실무수습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주시고 저희 역시 선물을 드렸던 훈훈한 광경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년필과 텀블러, '변호사 최현진'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선물 받았는데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지사에서의 2주는,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고민과 대화가 오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법원 방청 등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채용 비전제였기에 부담도 적었고, 저희 실무수습생들에게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주셨기에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근처 카페에서 오손도손 커피를 주문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네요.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실무수습생들을 위해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법무법인 YK 고양지사의 변호사님들과 대리님, 주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선배 변호사님들께, 저희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이성환

벚꽃 망울이 맺혀 금방이라도 그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날 것 같던 지난 4월 7일,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의무로 채워야 하는 공익활동 시간을 2시간이나 인정해주는 유인책을 사용한 집회였다.

집회에 모인 변호사들은 4월 20일 발표를 앞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정하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배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으므로,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단체가 요구하는 합격자 인원 1,200명은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197명 대비 37.53%에 불과하다. 작년 합격자 1,706명, 작작년 합격자 1,768명 대비 그 규모가 한참 못 미친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기성변호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후배인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줄이라는 것이다. 표현을 바꾸면 한마디로, “너 불합격 해라.”

2017년 최종적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은 수험생 중 극히 소수만 합격시키고 수많은 불합격자를 만들어내어 고시낭인을 양산하던 선발시험이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소수의 법조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고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였다. 그 ‘영감님’들에 대한 높은 접근 비용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다. 1,000명 즈음으로 선발되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로스쿨생으로 하여금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케 하는 등 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양성하는 것이 그 도입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제로 1기 로스쿨생들이 2012년에 치른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명 대비 87.15%인 1,451명을 합격시

켰다. 당시 남아있던 사법연수원의 1,030명을 더하여, 2012년 한해 총 2,481명이 법조인으로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이 꾸준히 합격자 인원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합격자 비율은 제1회 87.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54.06%에 이르렀다. 2012년 법조인 배출 인원이 2,481명이었으나, 2021년 법조인 배출 인원은 그 68.76%에 불과한 1,706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그 합격 인원을 더 줄여서 1,000명~1,200명 사이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공익서비스가 퇴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집회에 나온 변호사들의 발언을 보면 그 본질이 다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집회에 나온 청년변호사 김홍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고 퇴근은 10시, 12시가 돼서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결국, 이러한 집회, 주장의 본질적인 이유는 변호사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그 배출 인원 규모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이며, 법조인의 특권적 지위를 수호하고자 함이다.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나 공부했는데’, ‘내가 변호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보

상심리에, 변호사 배출 규모를 낮추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불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따져보자. 저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10시, 12시가 되어야 퇴근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부여한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일 것이다. 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는 소속변호사에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왜 10시, 12시가 되어야만 퇴근할 수 있도록 했나? 법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그 대표변호사도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받고, 10시,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하고 있는지 방문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 김 변호사는 왜 자기 로펌의 대표변호사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후배들에게 불합격 당할 것을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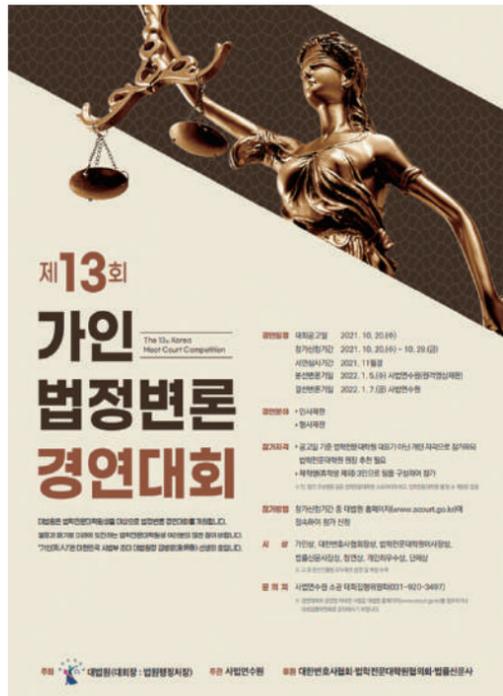
변호사단체는 인원수 통제를 내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적극적이며, 후배들에게 그 희생양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면, 그 도입 취지이던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 시험으로 그 성질이 회귀할 것이다. 그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취지도 형해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법학의 충실한 교육보다는 당장 변호사시험을 붙기 위해 시험 교과목만 수강할 것이다. 실제로 25개 각 로스쿨이 내세웠던 특성화 교육은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이러한 충실한 법학 교육의 형해화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의 뿌리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법조 시장의 포화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유사직역 통·폐합,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같은 법조 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험합격이 절실한 후배들의 합·불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변호사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올해 변호사시험의 수험생들을 불합격자로 만들면, 기껏해야 그 불합격자들이 내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될 것이고, 결국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적체되어 내년에 합격률 논란이 또 되풀이될 뿐이다.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가,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지 않은 돈을 받고, 10시, 12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퇴근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후배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 변론 기량 겨루는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로스쿨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예선과 본선은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3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에는 138개팀, 총 414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는 민사와 형사 각 16개팀이 진출했으며, 각 부문 4개팀씩 결선에 진출했다

■ 본·결선 대회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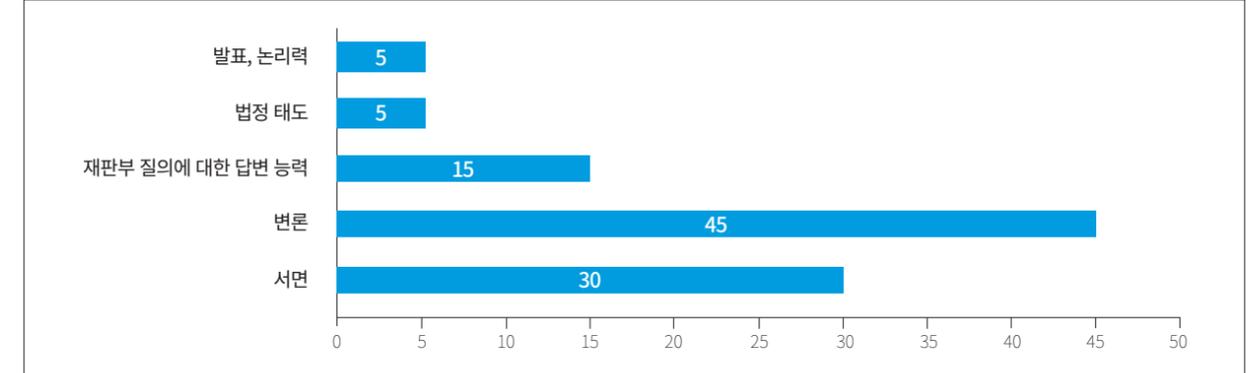
재판부: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 개요 등	5분
쟁점 정리 및 주변론(원고, 피고 각 7분 30초)	15분
재변론(원고, 피고 각 5분)	10분
재판부 질의(원고, 피고 각 5분)	10분
정리변론(원고, 피고 각 2분) 및 변론종결	5분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의 법적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 ■ 평가요소 배점 비율



※ 서면[쟁점 파악(10%), 논리 구성(20%)], 변론[쟁점 정리(10%), 쟁점의 구체화 - 입증(25%), 상대방 변론에 대한 반박(10%)]

### ■ 심사평

<p>“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암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법원칙과 논리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p>	<p>“형사부문 경연대회는 법적 취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을 기존 법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된 심사 요소였습니다.”</p>
민사 결선 심사재판장 김문석	형사 결선 심사재판장 성낙송

### ■ 수상결과

구분	민사	형사
1위	연세대(한민영, 이지오, 박서현)	고려대(이은서, 박세종, 강세민)
2위	서울대(최다인, 김재경, 한기웅)	고려대(현희재, 문정현, 이동준)
3위	성균관대(임현기, 노현서, 홍형석)	제주대(박준건, 성유준, 이찬용)
4위	충남대(유예나, 엄기호, 임민진)	이화여대(조예진, 마태영, 채아영)

※ 개인최우수상: 연세대 한민영(민사), 고려대 박세종(형사)

Mini interview

## 제13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승팀

### <민사부문> - 연세대

- 한민영, 이지오, 박서현

### <형사부문> - 고려대

- 이은서, 박세종, 강세민

#### ☞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민사팀:** 학교에서 배운 민법 쟁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중에 배운 것이 정말 많아 결과에 상관없이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형사팀:** 대회에 열심히 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아 매우 기쁩니다. 로스쿨 입학 이후 법학 공부에만 매진하다 이번 기회로 학업 외 활동에 이렇게 열정을 가져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면 작성, 변론 등에 있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들을 기르는 데 이번 대회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 예선(서면심사) 준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민사팀:** 예선의 경우 서면으로만 당락이 결정되며 경쟁률 또한 본·결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완성도 높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목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능한 쟁점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어떤 구조로 그 쟁점을 엮어야 설득력이 올라갈지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례법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등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토의한다면 밀도 높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팀:** 예선에서는 변호인측 변론요지서와 검사측 의견서를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며 단 일주일 동안 작성,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반면 일단 제출한 서면을 변론 등 다른 기회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서면의 완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팀은 초동모임에서 큰 쟁점을 추출하고 대략적인 역할을 분담한 뒤, 일과 시간에 리서치와 작성을 마치고 늦은 밤에 모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작성해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피며 논리적 완결성을 점검하고 누락된 쟁점은 없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나흘 가량은 이렇게 각자 분담한 초안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할애하였고, 나머지 사흘 정도는 이를 수합하여 각 10페이지의 분량 제한을 맞추기 위해 세부내용을 삭제, 요약,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하루 전에 누락한 쟁점을 또다시 발견해 아찔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 ☞ 본·결선은 어떻게 준비하였고,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민사팀:** 본·결선의 경우 상대팀과 1대1로 겨뤄야 하는 만큼, 어떤 쟁점들을 수면위로 올려 정면 대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 중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쟁점들을 선별하여 해당 쟁점에 대해 깊게



대회 우승 후 보드게임을 하며(민사팀)

파고들고자 하였습니다. 변론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모든 쟁점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약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본선과 결선은 예선과는 별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처음 문제를 받아보고 보니 기존에 주로 함께 출제되던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예년에는 분량 제한이 통상 변호인, 검사 각 15페이지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각 20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개념과 법리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가 필요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 출제 직후 주요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해당 판결을 꼼꼼하게 파고들어 옹호, 비판 입장 양측 모두에서 엄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판결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서면은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변론은 전달력을 증시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 준비했습니다.

결선의 경우, 본선과 달리 경연에서의 지위, 반대측 서면 및 추가 쟁점이 결선 1시간 전에 전달 및 공지되므로 광범위한 준비는 물론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상대 서면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만큼 쟁점을 다각도로 다시 뜯어보며 재판본 및 재판부 질의응답에 대비하였습니다. 결선 당일 공지된 추가 쟁점의 경우 본선 문제에 없었던 형소법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관련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상과 달리 새로운 사안이 추가되어 이를 준비하느라 대기시간 1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법리는 애초에 왜 고안된 걸까?’, ‘네가 쓴 서면에서 이 문장은 어떤 의도로 쓴 거야?’와 같은 질문을 최소 수십 번은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론도 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민사팀:**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서면 및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선 때에는 학기 중 1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본선 때에는 기말시험 끝나고 5~6일 만에 서면을 작성했고, 본선 발표 바로 다음 날 치뤄진 결선 때에는 하루 만에 원·피고 양 측의 변론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팀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모든 과정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 점을 고려하여 체력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팀:** 제13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 부문 본·결선의 주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였습니다.



본선 원격영상재판 참가 당시 촬영한 사진(형사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팀워크’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진 세 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논리구조 구성에 능한 팀원, 세부적인 논리 완결성 및 서면 작성 능력이 뛰어난 팀원, 팀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리더십을 발휘한 팀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은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전자지갑’과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피상적인 가상자산 투자 경험만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가상자산 관련 논문들과 서적을 찾아 살피면서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착오송금’이 기존의 ‘금전 착오송금’과 어떻게 유사하고 상이한지 논리를 보다 섬세하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 **우승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사팀:** 물론 운도 좋았고요. 하하. 운

외적인 요소로는 언제든지 서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법리는 애초에 왜 고안된 걸까?’, ‘네가 쓴 서면에서 이 문장은 어떤 의도로 쓴 거야?’ 와 같은 질문을 최소 수십 번은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론도 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사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팀워크’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진 세 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논리구조 구성에 능한 팀원, 세부적인 논리 완결성 및 서면 작성 능력이 뛰어난 팀원, 팀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리더십을 발휘한 팀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반박을 꺼리지 않으면서도 경청과 배려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팀원 간의 합이 잘 맞았을뿐더러, 쟁점을 탐구하는 데 끈질기게 임했다는 점 역시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늘어져 해결을 보아야 하루 모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 착오송금인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관련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논의가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세요!**

**민사팀:** 리서치를 할 때에는 교과서의 의의·취지 부분을 관련 조문과 연계 시켜 읽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을 쓸 때에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한 뒤 나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론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 표현이 귀에 잘 들릴까 고민하며 다양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형사팀:** 수험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절대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존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그 배경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치밀한 서면과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접하자마자 떠오르는 쟁점이나 판례에 갇히기 쉬운데, 팀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야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거치며, 문제된 사실

관계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해 기존 판례가 원용될 수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다른 법리 및 판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기와 방학 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기를 추천합니다!

<개인 최우수상 수상자 소감>

민사팀 - 한민영	형사팀 - 박세종
<b>1) 가인상 수상과 함께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b>	
아직 부족하기 그지 없는 학생인데 과분한 상을 두 개 씩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달여 간 이어진 대회 기간 동안 동고동락한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길을 돌아 시작한 법학 공부에 때로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통해 격려를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b>2)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은?</b>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 어떤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고민하는 방법, 고민의 내용을 재차 압축시켜 글과 말로 표현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훈련을 쌓아 오기는 하였으나 법적 사안에 이를 적용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의 태도를 잠시 내려놓고 제한된 시간이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거듭 다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줄곧 물 바깥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 오다, 물 속에 직접 들어가 이를 익힐 수 있었던 값진 계기였습니다.
<b>3) 어떤 모습의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b>	
'가인' 법정변론대회에서 '가인'상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 보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위인이시더라고요. 가인 같은 법조인이 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반의반 만큼이라도 사회의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이 된다면 저로서는 정말 뜻깊을 것입니다.	법과 현실을 매개하는 역할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법과 현실의 변화를 두루 충실히 파악하고자 힘쓰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르완다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품게 된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이 법질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법전문 진학의 단초가 되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향후 여건과 역량이 허락한다면, 우리 사회와 국제(법)적 문제를 매개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기를 막연하게나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로스쿨에서의 두 번째 해를 시작한 김진욱 학생은 입학 초기엔 많이 헤맸다고 말하며 웃었다. 모든 게 낯설었던 것도 잠시. 지난 1월, 그는 헌법재판에서의 변론 기량을 겨루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팀 최우수상과 가장 변론을 잘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수변론상까지 수상했다.

## “성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 학부 시절 전공과 꿈에 대하여

어린 시절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변호사라는 꿈이 생겼다. 꿈은 변호사였지만, 학부에서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리학과에 진학했다. 지리라는 과목 자체를 원래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막상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복수전공도 안 하고 심화전공으로 지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법학과 지리학이 큰 관련성은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두 학문 모두 재개발, 도시문제, 토지공법, 환경문제 등 사회 현안을 다루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 로스쿨 진학 후 처음 마주하게 된 법학은 어땠나? 법학과 친해지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있다면?

법학 과목을 한 번도 수강한 적 없는 상태로 로스쿨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학 초기엔 많이 헤맸다. 학부 때 하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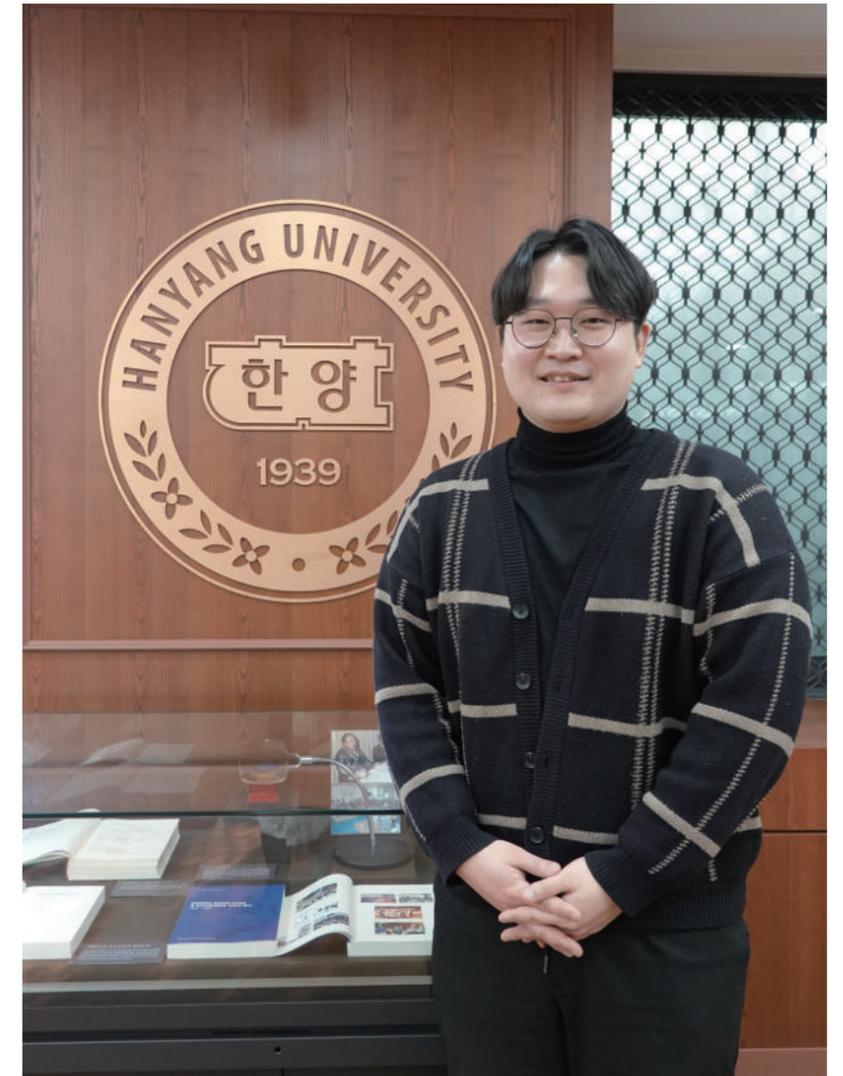
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됐다. 어느 날인가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질문의 내용조차 이해되지 않았다(웃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인지 물어봤다. 법학과 친해지고 싶다면,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미 법학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목별로 잘하는 동기들, 선배들, 교수님들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많이 물어봤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헌법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께서 매주 판례소감문 작성을 과제로 내주셨고 기말고사 시즌엔 발표까지 추가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웃음). 당시엔 정말 힘들었지만, 2학기에 이르러서 그리고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판결 요지만 보지 말고 판결문 전체를 읽으라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진욱  
학생



가르쳐 주셨는데, 그 덕분에 판결문도 빠르게 읽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성적도 향상되었고, 대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결과를 거둬, 이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웃음).

### 로스쿨 생활은 만족하나?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즐겁게 다니는 편이다. 공부의 전 과정을 100이라고 했을 때, 70~80 정도는 즐기는 편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보내는데,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거 아닐까? 공부 자체를 싫어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로스쿨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즐기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늘 뒤따라 주는 것은 아니다(웃음). 성적은 최선을 다해서 올리되 성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 성적은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만족할 정도로만 나오면 된다.

지난 1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출전해 팀 최우수상과 가장 변론을 잘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수 변론상도 수상했다. 감회가 남다른 것 같은데.

감사하다. 솔직히 우리 팀이 대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게 되었다. 똑똑하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팀원들에게 가장 고맙다. 또 지난 7회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멘토가 응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우리 팀의 경우 3명의 팀원이 각각 조항을 나눠서 맡은 파트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최종 결선에서는 내가 준비했던 CCTV 문제에만 포커싱이 됐다. 그러다 보니 다른 팀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아마 그래서 개인 우수변론상까지 받게 된 것 같다. 운이 좋았던 거다(웃음).

**이번 대회를 통해 얻게 된 것은?**

총 세 가지다. 첫째는 지난 1년간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지만 상대적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데 수상을 하면서 외부적 평가를 받았으니 큰 의미가 생긴 것이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얻었다. 둘째는 팀원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 대회를 준비하는 5주 동안 팀원들과 오후 1시쯤 만나서 평균 새벽 2시에 귀가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더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만 아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마지막은 현금이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중에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상금이 많기로 유명(?)한데, 상금을 세후 금액으로 줘서 깜짝 놀랐다. 헌법재판소의 배려가 느껴졌다(웃음).

**어느 분야에 일조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정말 많다. 지리학 전공을 살려서 토지공법이나 환경법 등 공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또 헌법에도 관심이 많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일해보고 싶다. 동시에 실무를 3~5년 정도 한 후에는 법학박사 과정을 밟아보고 싶다. 법학은 연구와 실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매력인데, 연구를 통해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부를 길게 해보고 싶기도 하다.

**김진욱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고른 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오답 풀이를 할 때 해설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틀과 내 머릿속 틀(사고구조)이 일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자신이 왜 이 답을 골랐는지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버릴 줄 아는 것도 실력**

리트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이 미련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하는 유형,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풀면 반드시 맞추는 유형 등 선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세운 후에는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깊게 고민하지 않고 빨리 버린다는 점을 기억하라.

**자기소개서는 학부 때부터 고민해야**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입시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부 때부터 꾸준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나의 경우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부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했다. 연합전공 과목 이수, 대내외 활동, 논문 대회, 로스쿨 관련 대회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더니 막상 자소서 작성할 때에는 큰 고민이 없었다. 자신이 경쟁력 있고 어필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 몇 가지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로스쿨 창> 원고 & 인터뷰이 모집**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로스쿨 창> Power Interview 코너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인 분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코너에 적합한 인터뷰이를 추천해주세요. (셀프 추천 환영)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자격시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는 매년 4월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음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그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변호사 업계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까닭이다.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한 학생들은 매년 1월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조인력의 기둥으로 태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미국의 로스쿨이나 일본의 법과대학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법문화와 경제 현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였고, 그 제도의 정착 여부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밝혀질 것이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종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법조인력 양성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도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점에서, 종래 법과대학 체제에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것과 유사한 시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인하여 수많은 고시낭인을 만들었다. 그러한 고시낭인은 국가인력 분배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법학 교육을 3년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회수를 5회로 제한함으로써 무제한 응시로 인한 고시낭인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행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15%에 달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은 하락하여, 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4.06%까지 떨어졌다. 당초 자격시험을 전제로 하였던 변호사시험이 이제는 2명 중 1명만 붙는 선발시험으로 전락한 것이다.

합격률 하락이 가져온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공부하는 대신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편중된 학습을 하고 있다. 도입 초기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설계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도 형해화되고 있다.

또한 법률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취지도 합격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2019년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겨우 33.6%였으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18.8%에 그쳤다.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로 선발된 졸업생의 합격률 또한 35.9%에 불과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가 이미 포화상태인 점을 근거로 변호사를 매년 1,200명만 배출하라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점, 종래 사후적 구제로서의 송무영역에 머물고 있었던 변호사직역과 시장이 예방법학에 기초한 서민적 법률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점, 선민익에 사로잡혀 고위직 또는 고액의 법조 카르텔에 안주하고 있던 법조시스템이 일반 국민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법률 서비스차원의 법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점, 아직도 실질적인 무변촌에 가까운 시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률이 매년 90%를 상회한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과 지표들이 나옴에 따라 법조인력이 포화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지 1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 배병일 교수

現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  
前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상승되어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된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

벚꽃잎이 흩날리는 매년 4월 하순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기이다. 올해 초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 역시 4월 20일에 그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발표 당일에 정부 인사(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합격 인원을 정하면 이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고 그 전체명단이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갈린다. 합격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희망에 부풀어 오를 것이고, 불합격자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삼키며 다시 두꺼운 법서를 펼칠 것이다. 필자 역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제자들의 낭보와 비보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의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에서도 국내 변호사시험의 연간 적정 합격자 수가 1,000~1,200명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는 재작년 합격자 1,768명, 작년 합격자 1,706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다. 로스쿨 도입 이전의 법조인 배출 제도인 사법시험은 고시촌의 수많은 수험생 중 극히 일부만을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으로, 합격만을 위하여 고시학원 수험법학에만 매몰된 법률가를 만들어냈다. 그 소수의 합격자 외에 수많은 불합격자를 양산하여 고시 낭인을 만들어냈으며, 소수의 법률가는 수적 희소성을 토대로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를 고가에 제한적으로 제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그 손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이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그 성격이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이란 용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학생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명 중 총점 720.46점 이상인 87.15%, 1,451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명을 더하여, 총 2,481명이 2012년 한해 법조인으로 배출되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고작 1,200명만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인 3,197명 대비 37.53%에 불과한 수치이며, 이는 곧 변호사시험을 다시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로스쿨 도입 이후 증가한 변호사로 인하여 법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안 그래도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87.15%였던 것과 달리 작년인 2021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54.06%에 그치면서 응시자 두 명 중 한 명은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다. 합격선 역시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을 수강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 강의들은 뒷전이 되어 결국 폐강되어 사라지고 있다. 나아가 로스쿨 도입 초기에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대상으로서 선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선발자와 지역균형인재전형 선발자들이 일반전형 선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므로, 정책적 배려가 퇴색되고 이러한 측면은 지방권 로스쿨을 고사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어 안타깝다. 나아가 각 25개 로스쿨별 특성화는 유명무실화되었고,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세미나와 같은 활동들은 형식적으로 수업시수만 채우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대로 1,200명만을 선발한다면, 변호사시험은 명실공히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부담이 급증하고, 로스쿨 제도의 교육과정은 붕괴될 것이다. 무엇보다 변호사 사회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은 로스쿨 도입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며, 그 손해는 고스

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처럼 국내 송무 시장은 일정 부분 그 성장이 정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유사직역 통합 시도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법조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그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지, 후배들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성벽만 높이 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입학정원 2,00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합격을 시킴으로써 불합격자를 최소화하되,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 학사과정에서 충실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하면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4월 20일의 합격자 발표는 합격, 불합격이 정해질 수험생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장차 도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 그 운명이 정해지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오랜 기간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론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 장석천 원장

現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現 충북지방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로스쿨 출범 당시 취지를 생각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

곧 11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매년 합격률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변호사 단체는 합격률을 낮추어야 하고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할 당시에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들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로스쿨 체제가 출범하였던 것이다. 교육과정 없이 시험만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로스쿨이 출범하였는데,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변호사시험 준비만을 하는 것이 전국 로스쿨의 현실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법률 지식 습득이 되어서는 안된다. 로스쿨 학생들은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과 깊이 있는 사고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변호사시험 과목만이 아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 과목만이 아닌 각 로스쿨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니 학생들을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은 수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시험 위주의 과목이수와 변호사시험 위주의 학습이 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익히고, 다양한 학문적 바탕에서 전문적인 법조인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도 시험이므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준비에만 전념하게 되고, 이는 로스쿨 출범 당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면 자격이 안 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변



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면 자격이 안 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명에서 3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때마다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호사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명에서 3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때마다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자격시험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음 변호사 경력 등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로스쿨 제도인 것이다. 로스쿨 졸업이 법조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라고 하여 송무만을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여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으므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바탕을 가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입학정원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전학선 원장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 I. 법과 문학이란?

나는 별다른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에 소설 한 줄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가 법과 문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법과 문학은 ‘문학의 법’(=법적 규율 대상으로서의 문학, Law of Literature), ‘문학으로서의 법’(Law as Literature), ‘문학 속의 법’(Law in Literature)을 다룬다.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책은 잘 썼든지, 잘못 썼든지 둘 중 하나다. 단지 그뿐이다.” 그러나 작가의 도덕적 세계관이나 예술표현을 (형)법으로 재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것의 온당함을 따지는 일을 ‘문학의 법’이 담당한다. ‘문학의 법’에서는 문학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검열, 포르노그래피의 문제, 여러 형태의 출판물 범죄(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선동죄, 혐오범죄)를 다루는 헌법과 형법 외에 저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민법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와일드는 저 글을 쓰고 얼마 안 가 ‘도덕 재판’을 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와일드 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도덕적 엄숙주의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문학 속의 법’). 또한 오스카가 법정에서 ‘문학(의 문장)으로 법률(문장)의 허구와 위선’을 반박하는 장면은 ‘문학으로서의 법’의 대상이 된다.

뭐 어찌 되었건 내가 문학(주로 소설)을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일이 법의 근본 문제들, 법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를 새롭게 사유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II. 법에도 감정이 있는가?

나는 학생들에게 <레미제라블> 전 5권(번역서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할 때가 있다. 이 책은 번역서 기준으로 3,000쪽에 달한다. 당신이 만약 법을 공부하는 이라면, 혹은 로스쿨 생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돌덩이 같이 무겁고 두껍고 단단한 법서를 읽기도 힘든데, 이런 걸 왜 읽어야 하나? 뮤지컬 영화 한 편 보면 될 것을. 그건 맞는 얘기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법 해석을 머리로만 할 수 있는가? 법은 이성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못 생명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는 정념의 질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소설을 읽으로써 더 열려있고, 인간적이며, 환경과 생태의 변화에 마음 아파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소설을 읽는다고 당장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도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는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수밖에 없지만, 누구나가 난민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나는 에리히 레마르크의 <개선문>을 읽고 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극한 마음으로 추체험해본 판사라면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가가 굳이 시간을 내서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다. 법에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들 보라고 <개선문>이 법원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이다.

## III. 공정과 사랑

이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그 무언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지난 몇 년 ‘우리’를 사로잡은 말, 공정만 해도 그렇다. 이 말이 가진 힘은 공정의 이성에도 있고, 공정의 감성에도 있다. 특히 후자를 잘 요리한 이들은 정동(情動, Affect)의 정치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온갖 소란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가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 이상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공정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정은 상품과 용역의 교환에서, 그리고 감정의 교환에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재화에서나 사랑에서나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공정 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사회의 특별한 윤리적 공헌이다. 이때 사랑 또는 우정은 공정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현대 사회경제조직 전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면, 그래서 이기주의가 공정의 윤리에 의해 겨우 억눌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의 틀 안에서 상품을 팔고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발견해내는 것은 과연 가능하냐고. 프롬은 나름의 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그는 사랑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자본주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는 복잡하고, 그 구조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이 체제에 동조(同調)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소설을 읽으며, 특히 우리가 ‘고전’이라 부르는 소설을 읽으며 나는 그런 이단자들의 모습 혹은 반면교사의 사례를 자주 만나게 된다. 고전이 왜 달리 고전이겠는가!

## IV. 정치적 계몽주의 프로젝트로서의 고전 읽기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르네상스, 즉 고대의 재생은 1500년경의 이탈리아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 근대 유럽에서 고대의 정치적 사회적 재생은 18세기에 일어난 현상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사>를 쓴 아르투어 로젠베르크는 부르주아 사회가 성장하면서 고대의 정치적 사회적 형태(예컨대 공화정)가 현실에서 ‘재생’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8세기의 지도적 민중적 정치가 및 국가철학자는 당대의 혁명운동과 고대의 정치사회 형태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특히 학생시절 고대의 문헌을 배운 사람들에게 고대는 오늘날보다 더 중

법 해석을 머리로만 할 수 있는가?

법은 이성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못 생명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는 정념의 질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더 열려있고, 인간적이며, 환경과 생태의 변화에 마음 아파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요한 역할을 했다. 그 시절 고전 읽기는 민중이 지배했던 역사, 민중이 주인이 되었던 역사로부터 용기와 도전 정신을 배우는 일이기도 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카틸리나 도당(徒黨)과 같은 이들과 투쟁해야 했을 때 자신을 제2의 키케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런 '고'(古)'전'(典)을 다시 읽자고 하는 운동은 근대 사회혁명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계몽주의의 프로젝트가 된다. 개인의 '일'로서의 독서가 정치적 사회적 주체화 '운동'으로 재정립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영향 아래, '세계문학전집' 혹은 '세계사상전집' 읽기라는 독일-프로이센적 교양(Bildung) 쌓기 활동으로 재차 축소되고 말았다.

과거 한국의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은 이런 전집에 수록된 고전 읽기를 강요당했다. 그 전집에 포함된 고전들의 맥락과 배경은 알지 못한 채. 당연히 책 읽기는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도 별 수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는 다른 방식의 고전 읽기를 시도해 보았다. 지금 이렇게 글적일 수 있는 것도 그 덕이다. 나는 그때부터 문학을, 특히 내가 관심을 갖는 19세기 소설을 정치적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연장선 속에서 읽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근대적 계몽의 맥락이 아니라 '파우스트'의 근대적 이성 자체를 성찰하고, 진보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맹신과 남성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반면교사의 사례로 그것을 읽는다. 그를 통해 평등하고 다원적인 가족법과 생태적 환경법을 위한 시각을 얻는다. 또한 그림(Grimm) 동화를 읽으며 커먼즈(communs)의 공동체적 질서가 생동하는 '좋은 옛 법'(altes gutes Recht)을 만나기도 한다.

V. 잃어버린 독서 시간을 찾아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 특히 법학자의 눈으로 읽는 소설 독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분초를 다투며 노동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한가 로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치다. 사회경제 양극화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처분권을 갖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노예와 달리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노동'

에 대한 처분권은 없다 - 우리는 이런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가 변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독서를 보장해야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동생 로베르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일은 이거다. 큰 병에 걸리거나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가능성을 빠뜨렸다. (과거) 프랑스 노동자들이 누렸던 긴 여름휴가(바캉스)다. 뜨거운 태양의 해변에서 혹은 골방이라도 좋으니 프루스트처럼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면 그것만큼 달콤한 일도 없으리라. 괄호 안에 과거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말안 해도 알 것이다. 이런 사치!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선거구호를 만들었다. “저녁이 있는 삶.” 그렇다. 저녁이 있는 삶.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자기 노동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삶. 여기에 직장에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쟁취해낸다면, 누구라도 수백, 수천 페이지의 책을 너끈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기록 읽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생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다. 그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재판은 혹은 법학 교육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계수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前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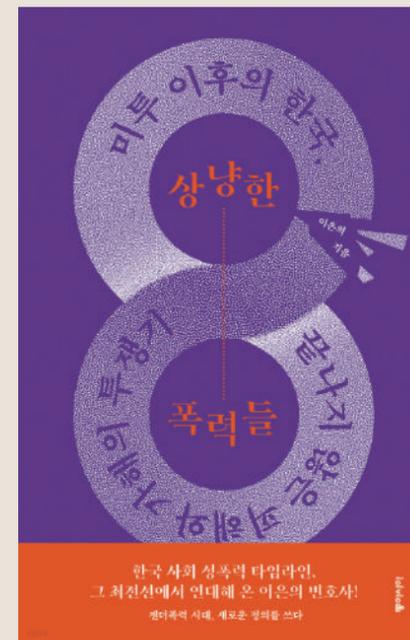
2021년도 제3차(10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10월에 시행된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이 담긴 해설집이 발간되었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 작 대 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 사례형에 한함
판 매 가 격	2021년도 제3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 청 방 법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상당한 폭력들



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승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곳곳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다. 『상당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저 자	이은의
출 판 사	동아시아
발 행 일	2021년 11월 3일
판 매 가 격	16,000원

# 오래 앉아 생활하다간 자칫 '의자병' 노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흡연만큼 나쁘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 등에서 오래 앉아 생활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앉아서 오래 생활하다간 자칫 ‘의자병’에 시달릴 수 있다. 정식 질환 명칭은 아니지만 의자병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진 현대인에게 급증하는 질환을 통칭한다.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목·허리 등 근골격계 이상을 유발해 긴장성 두통·요추 염좌·추간판탈출증 등에 시달릴 수 있고, 외로움·우울감이 생기기 쉽다”고 했다.



### ◇ 자세 잘못되면 거북목증후군 유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게 마련이다.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화면을 두고 보면 아래로 기울어진 머리 무게를 지탱하려고 목뼈와 주변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최수용 강북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은 “이 자세를 자주 반복하면 C자형인 목뼈의 커브가 사라지면서 거북목(일자목)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스마트폰 액정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게 좋다”고 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로 서 있는 자세도 척추·관절에 아주 좋지 않다.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형 곡선이어야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이 형태를 유지하려면 곧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허리·골반이 틀어지고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줘 내반슬(오다리)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앉아 있을 땐 상체는 목·엉덩이·허리가 일직선, 하체는 엉덩이와 무릎·발목이 직각되게 해야 척추·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옆에서 봤을 때 귀·어깨·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곧게 서야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양발을 조금 벌려 체중을 양쪽 다리에 분산해주는 것이 좋다. 왕배건 부평힘찬병원 정형외과 원장은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짝다리를 하면 근육의 피로가 한 곳에만 집중돼 피로도가 가중되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는 틈새 운동으로 제격이다. 계단 오르기는 대퇴사두근(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골반 부위의 운동 범위가 커 평지 걷기에 비해 칼로리가 2배 이상 소모된다.



권대익 기자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 ◇ 컴퓨터 모니터 눈높이에 맞추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루 종일 책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내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된다. 7개 경추로 이뤄진 목뼈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C자 곡선으로 돼 있다. 머리를 1cm 앞으로 내밀 때마다 목뼈에는 2~3kg의 하중이 더해진다.

목을 내미는 자세를 자주 취하면 일자목으로 변형돼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이 거북이 목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북목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곡선을 잃은 상태인 거북목증후군은 목 주변 근육과 신경을 압박해 목 통증은 물론 어깨 결림, 손 저림, 만성 두통 등을 유발한다. 또 주변 근육까지 긴장을 일으켜 목 움직임이 제한되면 목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컴퓨터 모니터나 책 읽는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모니터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조정하되, 시선이 15~30도 아래로 향하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모니터와 거리는 40~60cm가 적당하다.

또한 업무 중간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른쪽 손바닥을 왼쪽 옆머리에 대고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젖혀 2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또 허리를 펴고 양 손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엄지로 턱을 받쳐 올려 20초간 유지한다. 이어 양손을 깍지 끼고 뒷머리에 올려 머리를 45도 정도 앞으로 숙여 20초간 유지한다. 잠자기 전에 온찜질하는 것도 좋다.

### ◇ 피로 풀고 싶으면 ‘쪽잠’ 대신 ‘워런치’ 추천



점심시간에 잠깐 엎드려 자는 쪽잠은 오전 내내 쌓인 정신적 피로는 날릴 수 있지만, 목과 허리의 피로는 오히려 높아진다.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척추에 전달되는 압력은 누워있을 때보다 약 2배 높아진다. 이러한 자세를 반복하면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밀려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가 심해지거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엎드려 잘 때는 정면으로 고개를 숙이기보다 팔을 베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자세를 취하기에 목뼈가 과도하게 옆으로 비틀어져 목디스크도 생길 수 있다.

식사 후 시간이 난다면 쪽잠보다 ‘워런치족’이 되기를 제안한다. 워런치족은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식사 후 워킹화로 갈아 신고 걷기 운동을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걷기 운동은 척추나 무릎 관절 등에 부담을 주지 않고 허리와 허벅지 등의 근육을 강화하기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한 걷기 운동은 햇빛을 쬐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햇빛 노출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체내 칼슘·인 흡수를 돕고 뼈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로, 골밀도를 늘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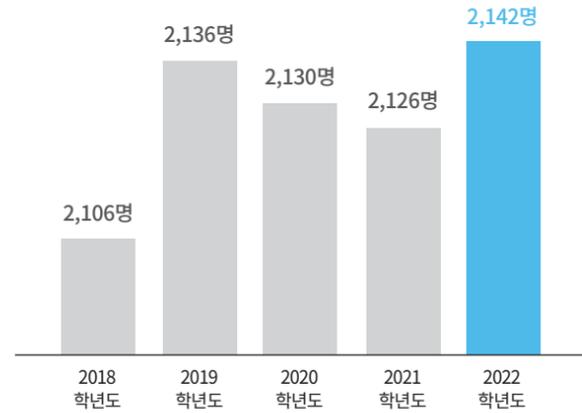


### [목디스크 자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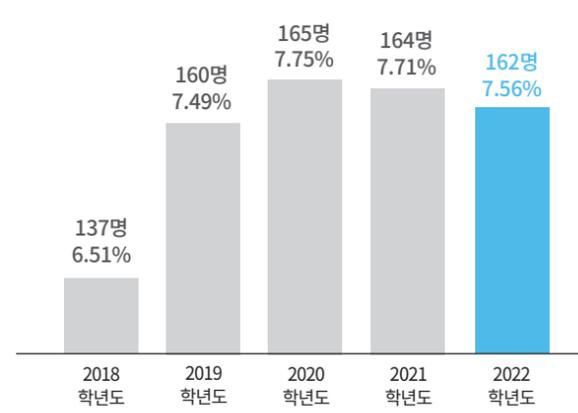
- 날개 뼈 안쪽에 심한 통증이 있다
- 뒷목과 목덜미가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
- 머리를 아픈 쪽이나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진다
- 아픈 팔을 머리에 올리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 어깨나 팔 쪽으로 통증이 뻗는다
-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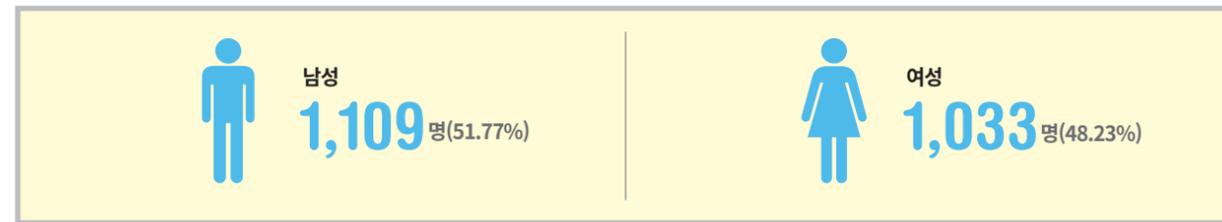
## 전체 합격인원



## 특별전형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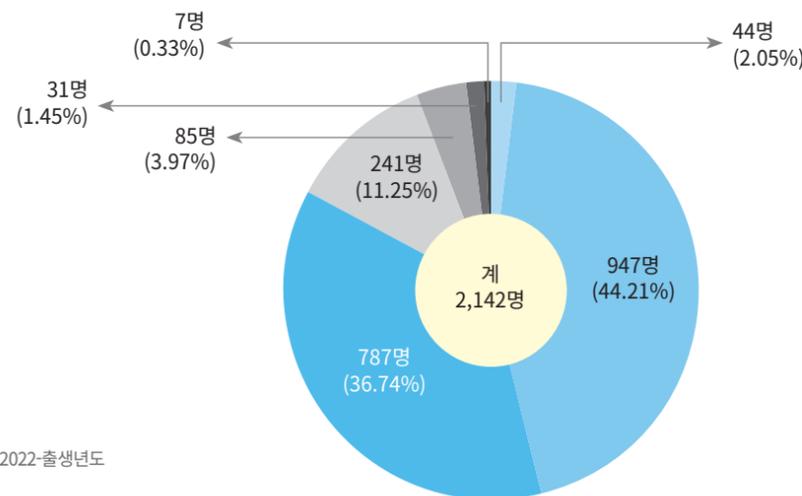


## 성별



##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 나이산출 : 2021-출생년도+1 또는 2022-출생년도

##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구분	자교/타교 합격자 현황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명)	405	1,737	175	1,967
비율(%)	18.91	81.09	8.17	91.83

##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회계열	278	294	572	28	24	52	306	318	624	29.13
상경계열	275	190	465	25	12	37	300	202	502	23.44
인문계열	135	244	379	21	9	30	156	253	409	19.09
법학계열	103	63	166	7	2	9	110	65	175	8.17
공학계열	88	36	124	11	1	12	99	37	136	6.35
사범계열	48	63	111	5	9	14	53	72	125	5.84
자연계열	41	40	81	1	1	2	42	41	83	3.87
의학계열	6	10	16	1	0	1	7	10	17	0.79
신학계열	8	5	13	0	0	0	8	5	13	0.61
약학계열	4	4	8	0	2	2	4	6	10	0.47
예체능계열	4	4	8	1	0	1	5	4	9	0.42
농학계열	3	0	3	0	0	0	3	0	3	0.14
기타	15	19	34	1	1	2	16	20	36	1.68
<b>계</b>	<b>1,008</b>	<b>972</b>	<b>1,980</b>	<b>101</b>	<b>61</b>	<b>162</b>	<b>1,109</b>	<b>1,033</b>	<b>2,142</b>	<b>100</b>

##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예정자(2022년 2월)가 1,098명(51.26%), 대학교 졸업자가 1,044명(48.74%) 합격하였다. 대학교 졸업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52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회계사 19명, 노무사 11명, 변호사 8명, 세무사 6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합격하였다.(직업 및 전문자격 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보이지 않는 위험에 맞서는 법률가

- 영화 스타워즈 속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단상 -



법무법인(유) 로고스,  
브릭로이어 대표

조원익 변호사

## 1. 스타워즈의 스토리 라인과 대중문화에서 ‘스타워즈 유니버스’가 갖는 위상

스타워즈 본편만해도 전체가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거대한 서사시인데, 그 중 가장 먼저 개봉한 것은 에피소드 4편이고, 에피소드 6편까지가 본편,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에피소드 1편부터 3편까지가 프리퀄, 에피소드 7편부터 9편까지가 시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스타워즈의 팬 층이 워낙 두텁고 이와 관련한 캐릭터 산업과 부가되는 서비스 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연구진 중에 스타워즈 팬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히 스타워즈의 서사 뿐만이 아니라 스타워즈의 캐릭터 자체가 하나의 산업 아이템이 되었다. 스타워즈의 본편인 에피소드 1부터 9까지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스토리들인 ‘만달로리안’, ‘보바 팻’, ‘클론 전쟁’ 시리즈 등 수많은 사이사이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어서 거대한 스타워즈 사가(STARWARZ SAGA)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정신세계의 이야기거리로 삼국지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미국에는 스타워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법률가로서 스타워즈 서사가 흥미로웠던 것은 자유를 위한 정치체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이었다. 스타워즈 이야기는 크게 ‘제국’과 ‘반란군’ 혹은 ‘저항군’의 대립을 큰 축으로 하여, 미시적으로는 아버지(아나킨)와 아들(루크), 루크의 조카(벤)의 대를 이어가는 대립구도와 보이지 않는 힘인 포스(force)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제국’이라는 전체주의적 집단과 자유를 갈망하는 ‘저항군’의 대립구도와 그 가운데서 억압하고 투쟁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러한 스타워즈 이야기 속에서 필자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하에서는 스타워즈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자유는 이렇게 우리 같은 갈채 속에서 죽는군요” - 스타워즈 전체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스타워즈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스타워즈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에피소드 3에서 아미달라 파드메(아나킨 스카이워커=다스베이더의 부인이자, 루크 스카이워커의 엄마)가 공화국 의회에서 탄식하는 장면이다. 공화국 의회 의장인 펠퍼틴은 ‘은하계의 안보와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공화국을 최초의 은하 제국으로 재편하겠다’(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tinuing stability, the Republic



will be reorganized into the first Galactic Empire!) 라고 선언한다. 공화국이 제국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다수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때 아미달라 의원(여왕직을 내려놓고 나부행성 의원이 됨)은 ‘자유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갈채 속에 죽는군요’(This is how liberty dies.with thunderous applause.)라면서 탄식한다. 도대체 공화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스타워즈에는 ‘공화국’과 ‘제국’이 나오는데, 필자가 스타워즈를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제국’과 ‘공화국’이 서로 대립한다고 오해했었다. 그러나 에피소드 3에 이르러서야 ‘공화국’이 ‘제국’이 된 것으로 나온다. 은하계 전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국’이 실은 자유를 수호하던 ‘공화국’의 후신(後身)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은하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정치체제였던 ‘공화국’이 어쩌다가 억압하는 ‘제국’이 되었을까.

제국이 등장하기 약 10년 전, 공화국 ‘나부’행성에는 ‘무역연합’이란 세력이 나부를 침공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나부 행성의 통치자 아미달라 여왕은 공화국에 무역연합의 드로이드 군대가 침략하고 있다면서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발로롬 의장은 별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대책 결정을 미뤘고, 아미달라 여왕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그 결과 나부 행성 의원 펠퍼틴이 새로운 의장이 되었다. 이 모



든 과정은 무역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팰퍼틴이 뒤에서 무역연합을 조종하면서, 앞으로는 나부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득표한 결과였는데(에피소드 1), 이는 에피소드 3에 가서야 확실히 드러난다.

이후 무역연합은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팰퍼틴의 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힘이 필요하다면서 군대 창설을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부 행성 아미달라 여왕을 다시 이용한다. 그 결과 자아가 낮은 수준의 클론 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클론부대가 창설되고, 팰퍼틴 의장에게는 비상통치권이 부여된다(에피소드 2).

그런데 팰퍼틴은 비상시에만 주어진 통치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행사하였다. 이후 뒤에서 분리주의자를 지휘하는 팰퍼틴의 실체가 드러나자, 공화국을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들이 팰퍼틴과 대립하게 되는데, 팰퍼틴은 이를 공화국에 대한 반란으로 선동하고, 공화국 클론 부대에게 제66호 지령(팰퍼틴은 클론부대에 공화국의 반대세력을 공격하라는 '제66호 지령'을 무조건 이행하도록 하는 생체칩을 심어두었다)을 내려서 수많은 제다이 기사와 아이들이 다스베이터와 클론부대에 의해 제거된다. 이에 따라 팰퍼틴 의장은 제다이의 반란을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공화국을 종식시키고 은하제국을 선언하면서 황제가 된다(에피소드 3). 여기에 반대하는 행성이 반란군 혹은 저항군을 결성하는 것이 에피소드 4 이후의

스토리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다스베이터와 아미달라가 낳은 아들 루크의 대립이 펼쳐지는 것이다.

### 3. 자유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긴장하며 지켜야 하는 것

어느 정도 헌정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공화국이 제국으로 재편된 과정에서 1930년대 독일을 연상할 것이다. 대륙계 근대적인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비스마르크의 독일제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새로운 독일이 1919년 제정한 헌법으로, 이는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

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원한 내용이 다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대적인 기본권을 정립한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인류사의 가장 끔찍한 기억 중 하나인 나치 독일이 태어났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불어닥친 세계 대공황의 경제위기 앞에서, 독일 국민은 극단적인 물가상승과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던 와중에 극우세력 중 하나인 나치당이 1932년 7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같은 해 당선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1933년 1월 독일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후 새로운 총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33년 2월 17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독일 공산당의 소행으로 알려졌고, 이후 3월 5일 진행된 총선거에서 집권한 나치당은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권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 이후는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다시 독일 제국을 선포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나치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자유의 말살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수권법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자유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갈채 속에서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 4.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변호사들이 제다이 기사단이 되어야 할 것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화국이 우리의 진짜적인지도 몰라”(What if the democracy we thought we were serving no longer exists, and the Republic has become the very evil we've been fighting to destroy?) 아미달라는 팰퍼틴 의장을 지켜야 한다는 아나킨에게 팰퍼틴 의장이 이끄는 공화국이 민주주의의 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에피소드 3).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로 흐르게 된다. 북한 역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통치행위가 모두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독재 정권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스타워즈의 제국의 탄생이나 나치 독일의 탄생 과정은 모두 형식적 법치주의가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포스'의 어두운 측면(Darkside)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정당하기를 요구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악법도 법인 것이 아니다. 아미달라 여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국가가 제도의 형식과 존재목적 없이 폭주한다면 시민의 적이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경계하고 늘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는 모두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법제도와 여기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면서 곧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특별히 법률가는 이를 위해 조직된, 법치주의 세계의 제다이 기사들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미디어 매체에 법률가, 특히 변호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일 많아졌고(변호사 자격 3명, 군인 3명),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업가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크사이드에 몸을 맡긴 사람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변호사와 법률가들이 법치주의 세계의 제다이 기사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간다. 이들이 함께 있는 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계속 안녕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자는 이런 인사를 빌어본다. 포스가 대한민국에 함께하기를(May the Force be with KOREA).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 및 법무부 강성국 차관과의 간담회 개최



1월 20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 및 법무부 강성국 차관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기정 이사장의 개회사와 송석연 제주대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5개교 법전원 원장들은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



다. 원장단은 법전원 결원 충원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고 방안,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법전원 논의 대응 방안 등의 현안 사항을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진행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전원 원장단은 ①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②법전원 결원 충원제도 유지 협조, ③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대를 위한 법무부의 지지와 협조, ④사시부활 및 온라인 법전원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표명, ⑤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일부과목의 선택형 필기시험 폐지)의 국회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하였다.

## 법전원협의회 제56차 이사회, 제60차 총회 개최



3월 4일(금) 법전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56차 이사회 및 제60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제56차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2021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3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였다. 이어 진행된 제60차 총회에서는 앞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법전원협의회 신임 임원 선임 등이 논의되었다.

## 법전원 신임 원장 간담회 개최



3월 14일(월)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실에서 한기정 이사장의 주재 하에 신임 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강원대 문병호 원장, 경북대 양선숙 원장, 부산대 윤석찬 원장, 아주대 권건보 원장이 참석하여, 법전원협의회 주요 사업계획과 주요 현안 사항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신임 원장 간담회는 초임 원장 대상으로 개최됨.

## 제3주기 법전원 교육성과 평가 관련 간담회 개최

3월 4일(금)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제3주기 법전원 교육성과 평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전원협의회 측에서는 한기정 이사장, 서울시립대 이상경 원장, 한양대 강성태 원장, 서울대 천경훈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대한변협 평가위 측에서는 김주덕 평가위원장 외 3인이, 교육부에서는 대학학사제도와 김태경 과장과 서기관이 참석하였다. 제3주기 법전원 시범평가 항목인 교육성과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주덕 평가위원장은 “교육과정MAP을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내부적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간담회 이후 25개교에 교육과정MAP을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 2022년 2월, 3월 취임

	문병호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선숙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석찬 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